의안 번호	38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9.22.)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

2026. 9.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서명일 의원 등 11명

나. 발 의 일: 2026. 8. 24.

다. 회 부 일: 2026. 8. 27.

2. 제안이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과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협의를 명문화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다. 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나.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권 및 직무대행, 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와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후보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 내 소통·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조문의 의미나 제도적 내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법령문에서 문맥상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수형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성)제2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대표 외에 “사무국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다만, 교섭단체의 내부 조직과 직위는 교섭단체의 자율적인 운영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에 “사무국장”을 직접 규정할 경우 그 직위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으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구성)제3항과 제4항은** “연서·날인”을 “연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으로 개정하고, “즉시”를 “지체 없이”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문장의 명확성과 조문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대표의원의 권한 및 직무대행)는**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권과 의장과의 협의 기능을 명문화하여 교섭단체의 공식적인 의사전달 및 협의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의원 유고시 부대표의원이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교섭단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능)는** 교섭단체의 핵심 기능은 의회 내부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을 수행하는 원내 협의체로서,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필수 기능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단 회의 등에 참석하여 교섭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회 내 소통과 협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의장단 회의 등” 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의장단 회의” 는 단지, 의회 내부 협의 성격의 회의체이므로 법령에서는 용어의 명확성이 요구되기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는** 교섭단체별 의원 수와 소속 의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 구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섭단체 간 합리적인 의석 배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의견을 들어” 라는 표현과 “추천해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이 결합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 청취가 사실상 의장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위원의 선임)제1항은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조례 간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지원)는** 교섭단체가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경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교섭단체의 입법·정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과 의회 내 협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교섭단체 간 소통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기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표의원의 대표권 및 직무대행 규정과 교섭단체의 공동 입법활동·정책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대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소통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의2**의 "의장단 회의 등" 은 그 회의의 범위와 참석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의 성격이나 참석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의3**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 조례 간 절차와 권한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안 제4조의2 및 안 제4조의3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및 의회 내 권한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7. 토론 요지: 기재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

붙 임 개정안에 대한 수정가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단 회의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2(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회의 참석)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선임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각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후보를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의3(상임위원 및 위원장 추천 등)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삭 제)**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와 해당 위원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하되,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한다. 이 경우 배정된 상임위원은 본회의의 의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창원특례시의회